

사업자 권리 보호소

사업자 권리 보호소 (Advocate of Business)는 뉴욕 주 사업자와 산업재해보상위원회 간의 연락소로 고용주가 근로자 보상에 대한 의문점을 한 장소에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사업자 권리 보호소는

- 사업자의 보험 가입 문제 및 산업재해보상법 준수를 지원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 Law).
- 고용주와 정부 공무원이 근로자 보상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근로자의 책임을 이해하도록 교육합니다.
- 사업자 협회와 고용주 그룹을 만나 근로자 보상 문제에 대해 청취하고, 해당 문제를 산업재해보상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업자 권리 보호소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규모와 산업을 불문하고 사업장을 가진 고용주가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산업재해보상위원회 사업자 권리 보호소

328 State Street
Schenectady, NY 12305
1-877-632-4996
AdvocateBusiness@wcb.ny.gov

사업자 권리 보호소는 고용주의 책임 및 보험 요건 같이 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험료 및 벌금을 절약하도록 돕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일정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사업체 및 근로자 보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전화번호로 사업자 권리 보호소에 문의하십시오.

(877) 632-4996

연락하실 때, 다음 정보를 미리 알아보십시오.

- 완전한 기업명
-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보험사 및 증권 번호
- 연방 사업자 식별 번호 또는 WCB 사업자 번호
-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수신 문서

다음의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영리 사업체의 근로자들

주택에서 주당 40시간 고용된 가사 도우미, 부모, 동반자 및 거주 도우미

이전 연도에 농장 노동으로 \$1,200 이상의 보수를 받는 농장 근로자

비영리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위원회에서 직원으로 판단한 기타 근로자

보험이 필요없는 사람:

자영업자

개별 동업자

모든 주식(각각의 지분) 및 모든 법인 사무실을 소유한 1인 또는 2인 법인이며, 직원을 두지 않는 법인 소속 개인

사업주는 보험 증권에 본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 보험사에게 사고를 즉시 신고합니다.
- 사고 사유를 조사합니다.
- 안전 유해 사항을 정정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회복 과정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와 항상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은 임금에 대한 보상은 상해 후 18일 또는 통지 후 10일 이내 중 늦은 시간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사고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 허용된 시간이 지난 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의 즉각적인 보고 및 적시 보상을 통해 근로자 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산재보험 및 장애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상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고용주의 책임을 보호합니다. 근로자 산재보험 및 장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금전적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의도적이고 실질적으로 다음의 행동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급여의 삭감 신고 또는 은폐.
- 적절하게 분류된 보험료 계산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오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위원회는 고용주가 사업상 필수 근로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사일 또는 부모에 대한 벌금 제외) 작업 정지 명령을 발동합니다.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위원회에 지불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작업 정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합니다.

사업자 권리 보호소는 고용주의 책임 및 보험 요건 등 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일정은 **(877) 632-4996** 번으로 연락하시거나 **AdvocateBusiness@wcb.ny.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